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700호	문정복의원	2025. 7. 24.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 9. 23.)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원회 회부
	제16245호	진선미의원	2026. 1. 22.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2. 24.)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법안심사소 위원회 회부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 3. 24.)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단서 중 “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으로 한다.

제1장에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평가 등) ① (생 략)	제11조의2(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 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 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 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 · 학과 · 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 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 · 치의학 · <u>한의학 또는 간호학</u>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한의학 · 간호학 또는 약 학-----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u> <u>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u> <u>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u> <u>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u> <u>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u> <u>“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u> <u>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u> <u>야 한다.</u>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
부모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